

1. 석유류 국제물류의 성과요인으로 물류비용과 안정성의 2가지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고, 석유류 물류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조선시장의 독립변수를 22가지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정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2. 유조선시장의 요인이 석유류 국제물류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3. 우리나라 석유류 국제물류 경로를 사례별로 파악하였으나, 각 경로의 특성과 관계되는 유조선시장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우리나라 석유기업의 국제물류관리에서 각 경로별로 적합한 유조선 운영형태와 물류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연안습지보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해사법학과 공경자
지도교수 한병호

연안습지는 육상으로부터 연안으로 흘러드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흡착제거 등의 자정작용과 수산자원의 산란과 서식처 그리고 해양휴식공간으로서의 관광자원 등의 제공 등 인간에게 너무도 많은 혜택을 주는 공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갯벌은 생태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를 고루 갖춘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갯벌에 속한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자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국토확장이나 식량안보차원 등의 이유로 간척·매립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연안습지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인 대책에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인 접근방법에는 사회학, 지리학, 경제학, 생물학 등 많은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거기서 제기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방법으로는 기존 입법의 개선을 통한 방법과 기존입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입법을 통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먼저, 연안습지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기존입법의 개정을 통한 방법으로는 현행의 습지보전법을 개선하는 것일 것이다. 첫째, 습지보전법상의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현실적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를 내륙습지와 연

안습지로 구분하고 있다. 내륙습지는 호·소·하구 등의 지역을 말하며, 연안습지는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갯벌 또는 간석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안습지의 개념은 갯벌뿐만이 아니라 연안에 관련되는 모든 습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협약이나 외국의 경우에는 연안과 관련된 환경은 연안습지로, 내륙과 관련된 환경은 내륙습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연안과 관련된 습지는 연안습지로 분류하고, 내륙과 관련된 습지는 내륙습지로 분류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둘째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생태적 기능이 상호보완적이며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갯벌이 없으니 갯벌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단 모든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되, 그 중에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습지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여 지금의 습지보호지역처럼 관리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보호지역은 그 보호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전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독일의 갯벌보전과 관리방법은 우리나라의 갯벌보전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갯벌의 주변에는 갯벌과 생태계를 같이하는 염습지나 해안사구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 지역은 갯벌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 동시에 갯벌의 보전을 위해서는 이들 지역의 보전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곳은 갯벌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여야 하는 바, 습지보전법에서는 이들 주변지역의 지정은 습지보호지역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이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주변지역의 지역을 수치로 법정화 할 것이 아니라 주변 생태계의 여건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국가의 습지보전의 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습지보전의 책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공유수면매립과 같은 개발업무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전의 업무가 중앙에서만 행해진다면 지방에서는 지방특유의 개발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방으로의 권리와 의무의 이양이 잘못 운용되어 보전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제재도 가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습지보전책무와 관련하여 현행 습지의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관리주체도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말고 관리주체를 통합하여 더욱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꾀하였으면 한다.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해양개발이나 자원의 연구 등 해양수산부 고유의 분야가 있으며, 환경부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환경보전이 그 고유의 분야일 것이다. 따라서 습지의 경우에도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의 구분 없이 일관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는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보전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넷째로, 법률의 경과조치 조항은 재고해야 한다. 갯벌생태계중의 하나인 염습지는 개발위주의 정책에 희생물이 되어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갯벌에 대한 정책도 개발보다는 보전에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습지보전법 시행 이전의 면허의 남용으로 인하여 지금도 습지보전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갯벌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정책들도 일부 바뀌어 영산강 간척사업의 일부가 취소되었으며, 농림부에서는 전라남도의 함평·무안 지역에 계획했던 거의 600km²의 간척사업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것은 보전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존의 계획들과 관련된 사업을 취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8년부터 행해진 습지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정책은 “No Net Loss of Wetlands”로서, 더 이상의 습지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따라서 습지보전법의 법률의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은 얼마든지 재고될 수 있으며, 이 조항이 철폐된다면 연안습지의 간척·매립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으리라 본다.

다섯째, 습지보호지역의 해제·변경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이나 해제·변경을 할 수 있다. 특히 후진국가일수록 개발정책에 의한 환경파괴와 사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우리의 연안습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익을 위한 사업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남아있는 연안습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엄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의견수렴 시에는 반드시 해당주민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인 및 제3자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제3자 및 전문가의 참여는 보다 신중한 개발을 위한 전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해제 및 변경 등을 원인으로 소송이 있는 경우, 연안습지의 희귀성 및 사전대책적인 보전의 성격상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누구든지 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민소송의 도입이나 공공신탁이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의견수렴절차와 관련하여, 연안습지를 개발해야 할 경우 법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을 연안습지의 경우에는 제외시켜 법정면적과는 관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며,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청회의 개최를 의무화시켜 질차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갯벌을 지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습지보전법에서의 손실보상의 범위는 다른 보전관련법에서 보상하는 보상범위보다 좁아서 실질적인 보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적어도 다른 보전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수준정도의 보상을 습지보전법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야생동·식물보호법 등에서는 민간단체의 육성내지는 국가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습지보전법에는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에 민간환경단체의 축적된 역량과 습지보전에 대한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볼 때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육성이 요구된다.

연안습지는 일방적인 자원의 제공자가 아니라 환경용량을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존재이다. 연안습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각종 식량자원과 오염정화 능력, 재해조절기능 등이 인간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전체 지구환경 악화의 마지막 방어자인 해양을 건강하게 보전하고 유지하여야 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자연자원인 연안습지를 지킬 의무는 지역주민만의 의무가 아니라 전 국민의 의무이자 전 세계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4. 해상소송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 선박충돌과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

해사법학과 장 경 식
지도교수 정 영 석

海上企業은 國際性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海上企業의 활동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어느 나라의 法廷에서 訴를 제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國際裁判管轄이 문제된다. 현재 國際裁判管轄에 관하여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國際協約이나 國際法上的 原則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분쟁은 各國別로 개별적인 원칙에 따라 해결을 하고 있어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곳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게 되어 이른바 “法廷地探索”(forum shopping)을 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海事法律關係에 있어서 不法行爲責任의 대표적인 사건 유형인 船舶衝突事件에 있어서 國際裁判管轄의 결정문제와 契約責任의 대표적인 유형인 船荷證券과 관련한 분쟁사건에 있어서 國際裁判管轄의 결정문제를 검토하여 이와 관련한 海事訴訟에 있어서의 國際裁判管轄에 대하여 국제적 추세 및 法原理에 적합한 立法論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船舶衝突의 경우에 國際裁判管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船舶衝突水域을 領海와 公海로 분류한 후에 領海內에서의 衝突은 自國領海와 外國領海 그리고 公海上에서의 衝突은 同一國籍船 사이의 衝突과 다른 國籍船 사이의 衝突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船舶衝突이 領海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不法行爲地(衝突地)인 沿岸國의 法院이 원칙적으로 裁判管轄權을 가지며 公海에서의 同一國籍船舶 사이의 衝突인 경우에는 同一旗國法에 의한다.

둘째, 領海에서의 선박충돌 시에는 沿岸國의 裁判管轄을 기준으로 하되 衝突船舶의 國籍이 같은 경우에는 訴訟經濟的인 측면을 고려하여 自國領海이던 外國領海이던 公海上 衝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共通旗國의 裁判管轄과 法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